(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7/2568호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8호 개정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8호『투자 촉진 정책 및 기준』에 따라, 태국이 반도체 업스트림 분야 및 고부가가치 전자 부품 생산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 선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식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년 (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및 개정안에 의거하여 다음 내용을 고시한다.

1.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5호 제5조 제5.1항의 제5.1.3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프로젝트 승인 기준을 개정한다.

"반도체 및 첨단 전자 산업 프로젝트의 생산 기지 이전의 경우"

(1) 제조 연도부터 수입 연도까지의 기간이 5년 이하인 중고 기계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허가되고, 법인세 면제 대상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며,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중고기계는 기계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사용, 적정가격 평가 등에 관하여 공인 기관(recognized institution)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제조 연도부터 수입 연도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고 기계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허가되고, 기계 장부가액의 50% 내에서 법인세 면제 대상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며,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중고기계는 기계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사용, 적정가격 평가 등에 관하여 공인 기관(recognized institution)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제조 연도부터 수입 연도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중고 기계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허가되나, 법인세 면제를 위한 투자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수입 관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해당 중고기계는 기계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사용, 적정가격 평가 등에 관하여 공인 기관(recognized institution)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접수된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고시일 2025년 7월 22일

Pichai Chunhavajira
(Mr. Pichai Chunhavajira)
부총리
투자위원회 의장